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2018. 12. 14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5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재난안전실장 오진섭)

가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

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 피보험자가 됨
- 보조금의 지원 등 (안 제4조)
 -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보조
- 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(안 제5조)
 - 시장·군수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,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결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.
-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충청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3조는 「주민등록법」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정하여 충청도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시·군에 지원

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5조 도민안전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안전보험 추진과 관련해 시장·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9. 28.~'18. 10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충청북도지사가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안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.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를 조례의 상위법령이나 위임 된 근거로 명시한 사유
- 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
- 괴산, 단양, 영동군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제도를 시행 중 인데 이에 대한 중복수혜의 문제점

- 인천시의 경우 보험금의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, 산정, 청구, 지급, 지급 제외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은 보험가입을 하는데 있어 예산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사유
- 우리와 가까운 충남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50:50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을 35:65로 정하고 있어 시·군에만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
- 매년 같은 예산의 보험료를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
- 마지막으로 보험사 선정, 보장항목 그리고 보상범위와 한도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청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도민안전보험"이란 충청북도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·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2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, 사회재난을 말한다.

제3조(가입대상) ① 충청북도에 「주민등록법」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(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)을 피보험자로 한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시장·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)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·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는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

다.

제6조(자료 요청)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,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

2. ~ 11. (생략)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료 가입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보조금의 지원 등)
 - 충청북도지사는 시장·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추진에 필요한 보험료를 추계하였음

나. 추 계 결 과 : '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,194,560천원(도비 1,111,980, 시군비 2,082,580)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- 도 비 : 1,111,980천원(35%), 시군비 : 2,082,580천원(65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최성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도민안전보험	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	지방세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222,396	1,111,98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416,516	416,516	416,516	416,516	416,516	2,082,58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